

보도자료



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· 작성부서 |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| | |
| · 담당자 | 조성목 팀장 (☎ 3786-8155~57) | | |
| · 배포일 | 2005. 6. 3 . | 배포부서 | 공보실 (☎ 3771-5788~91) |

※ 이 자료는 6월7일(화)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신용카드 할인(깡) 가맹점 적발 실적 급증

- '05. 8. 1.부터 현물매매를 수반(일명 “현물깡”)한 카드할인 행위 처벌 -

주요 내용

- 금융감독원은 불법 카드 할인(깡)을 방지하고자 '03. 11월부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관리강화, 카드할인 행위에 대한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, 4매 이상 복수카드 소지 회원에 대한 카드사간 신용공여한도 정보 공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,
 - '04년 중 삼성카드 등 8개 카드사에서 총 103천여명의 카드할인(깡) 혐의 회원을 적발하여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를 축소하고, 7,775개의 카드할인혐의 가맹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.
- 따라서 「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」에 접수되는 월 평균 카드깡 피해신고건수는 '02년 55건에서 '04년 7건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등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나
 - '05. 4월 적발한 카드깡 업체(341개)에 대한 분석 결과 카드깡 업자들은 종전에 비해 높은 수수료*를 받고 있어(수수료율은 '04.8월 15%수준에서 '05.4월 18%수준으로 3%p 상승)

※ 금융감독위원회·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fsc.go.kr>와 www.fss.or.kr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- 이러한 수수료율로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매달 카드할인을 통하여 돌려막기를 계속할 경우 채무는 6개월 후 약 2.7배로, 1년 후 약 7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그러므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이와 같은 카드할인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, 카드사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되어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,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과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.
- 한편, 카드할인 가맹점은 형사처벌은 물론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」상 중대범죄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편취한 수익을 전액 몰수 당할 수도 있다며 카드할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.

□ 아울러, 금융감독원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개정·시행('05. 5. 31. 공포, '05. 8. 1. 시행)으로 앞으로는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도록 하고,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자금유통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됨으로써, 이와같은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.

*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물매매를 통해 자금을 변칙 유통해 주는(일명 “현물깡”)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

<붙임 1> 연도별 카드할인가맹점 해지 추이

<붙임 2> 카드사별 가맹점 해지 및 회원조치 현황

<붙임 3> 카드할인(깡) 이용시 채무가중 추이 분석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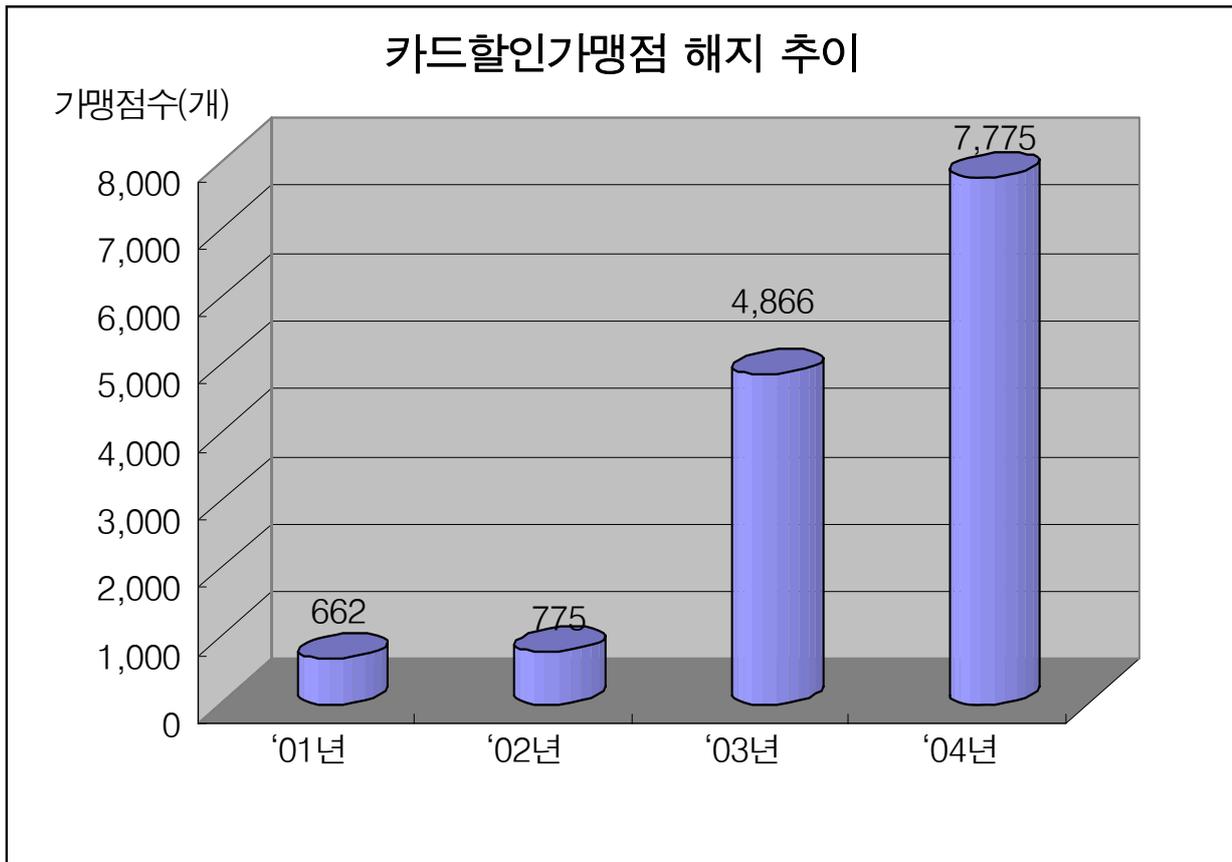
(붙임 1)

연도별 카드할인가맹점 해지 추이

(단위 : 건)

| 연도 | '01년 | '02년 | '03년 | '04년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해지건수 | 662 | 775 | 4,866 | 7,775 |

* 8개 주요카드사(국민, 롯데, 비씨, 삼성, 신한, 엘지, 외환, 현대카드) 대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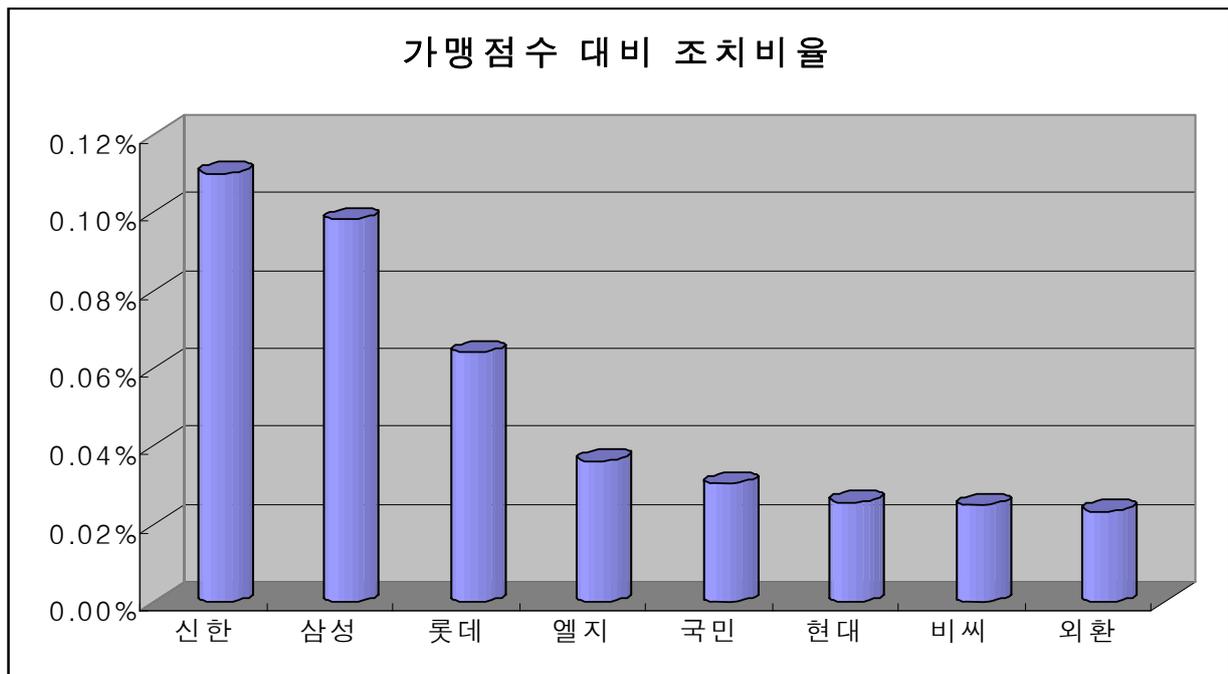
(붙임 2)

카드사별 카드할인(깡)가맹점 해지 현황
(’04~’05.1/4분기)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| '04년 계(A) | '05년 1/4(B) | 합계 (A+B) | 총 가맹점수 (천점)* | 가맹점수 대비 조치비율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국민 | 370 | 85 | 455 | 1,492 | 0.03% |
| 롯데 | 718 | 457 | 1,175 | 1,832 | 0.06% |
| 비씨 | 447 | 71 | 518 | 2,088 | 0.02% |
| 삼성 | 1,607 | 101 | 1,708 | 1,735 | 0.10% |
| 신한 | 2,601 | 167 | 2,768 | 2,513 | 0.11% |
| 엘지 | 1,191 | 94 | 1,285 | 3,547 | 0.04% |
| 외환 | 436 | 90 | 526 | 2,251 | 0.02% |
| 현대 | 405 | 18 | 423 | 1,651 | 0.03% |
| 합계 | 7,775 | 1,083 | 8,858 | 17,109 | 0.05% |

* '04.12.31. 기준(중복가맹점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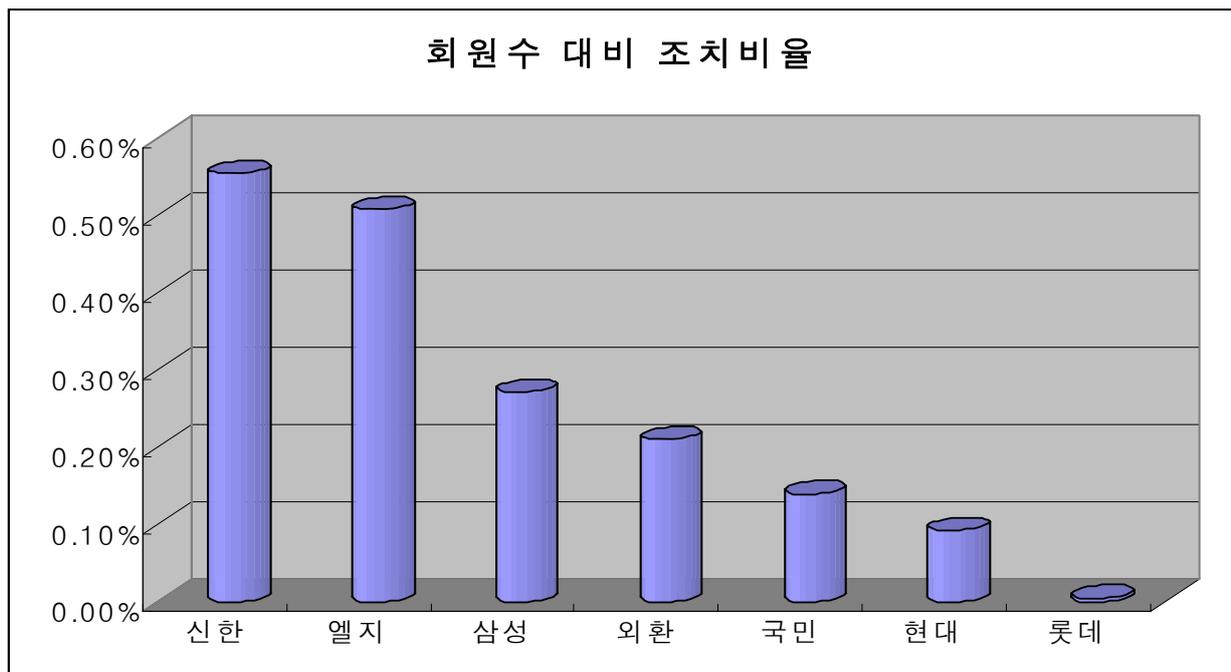


카드사별 카드할인(깡)회원 조치(거래정지, 한도축소) 현황
(’04~’05.1/4분기)

(단위 : 건, %)

| 카드사 | ’04년 계(A) | ’05년 1/4(B) | 합계 (A+B) | 총 회원수 (천명)* | 회원수 대비 조치비율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국민 | 11,847 | 4,259 | 16,106 | 11,544 | 0.14% |
| 롯데 | 179 | 66 | 245 | 6,196 | 0.00% |
| 삼성 | 16,700 | 7,731 | 24,431 | 9,016 | 0.27% |
| 신한 | 11,617 | 852 | 12,469 | 2,249 | 0.55% |
| 엘지 | 49,202 | 11,557 | 60,759 | 11,969 | 0.51% |
| 외환 | 11,329 | 692 | 12,021 | 5,715 | 0.21% |
| 현대 | 2,696 | 209 | 2,905 | 3,146 | 0.09% |
| 합계 | 103,570 | 25,366 | 128,936 | 49,835 | 0.26% |

* ’04.12.31. 기준



(붙임 3)

카드할인(깡) 이용시 채무가중 추이 분석표

□ 이용한도 500만원의 신용카드 4매(총한도 2,000만원)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연체
대금 400만원을 카드깡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를 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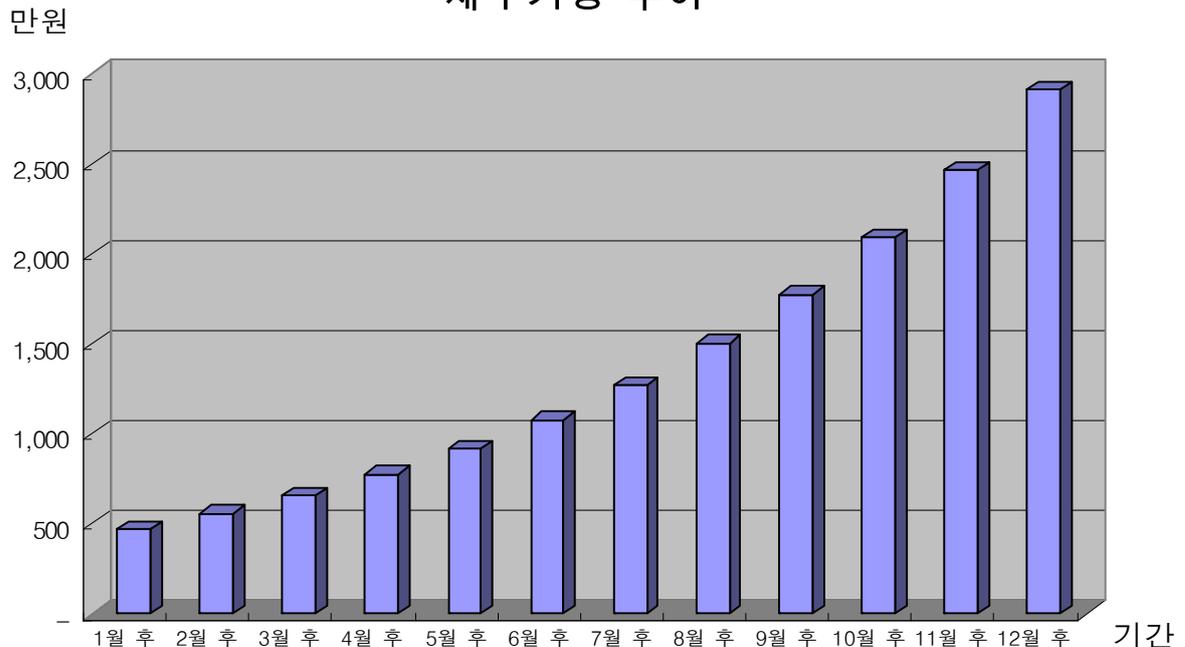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만원)

| 기간 | 원금(A) | 수수료(18%)(B) | 수수료 누계 | 결제금액(A+B)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1월 후 | 400 | 72 | 72 | 472 |
| 2월 후 | 472 | 85 | 157 | 557 |
| 3월 후 | 557 | 100 | 257 | 657 |
| 4월 후 | 657 | 118 | 375 | 775 |
| 5월 후 | 775 | 140 | 515 | 915 |
| 6월 후 | 915 | 165 | 680 | 1,080 |
| 7월 후 | 1,080 | 194 | 874 | 1,274 |
| 8월 후 | 1,274 | 229 | 1,103 | 1,503 |
| 9월 후 | 1,503 | 271 | 1,374 | 1,774 |
| 10월 후 | 1,774 | 319 | 1,693 | 2,093 |
| 11월 후 | 2,093 | 377 | 2,070 | 2,470 |
| 12월 후 | 2,470 | 445 | 2,515 | 2,915 |

☞ 최초 연체금 400만원이 6월 후 1,080만원으로 증가하며 10개월 경과시점에
총한도 2,000만원을 초과하여 돌려막기가 불가능



채무가중 추이



<참고>

관련법규 발췌

여신전문금융업법(개정법률)

- 제70조(벌칙)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·알선한 자
- 가.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
- 나.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·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·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
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

- 제2조(정의) 2. “범죄수익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

- 제8조(범죄수익등의 몰수)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.
1. 범죄수익
 2.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

[별표] 중대범죄

12.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·제2항제3호 및 제5항의 죄